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8.2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8.22. 이학래 의원 외 12명
- 나. 회부일자 : 2016.8.22.
- 다. 상정일자 :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6.8.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효식 의원

가. 제안이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의 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복지정

책을 추진하도록 정함(안 제2조)

2)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5조)

3)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건강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6조)

4)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5)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을 하여야 함
(안 제8조)

6)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
설을 확충·지원하여야 함(안 제9조)

7)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
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또한 노인복지정책을 「사회보장급여
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노인의 건강증진 사업

과 사회참여 지원,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노인복지법」 제2조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면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